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1가합103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성민

피고1. G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성태, 김현진

2. H

3. I

4. J

5. K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X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수

담당변호사 김웅수, 이민우

변론 종결 2024. 8. 23.

판결 선고 2024.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① 원고들의 피고 K, L, M, N, O, P, Q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66. 6. 23. 접수 제3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V, W, X에 대한 별지1 목록 제4,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6. 7. 4. 접수 제380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피고 K, L, M, N, O, P, Q, V, W, X에 대한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6. 7. 4. 접수 제38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과 ② 원고 A, B, C, D, E의 피고 G종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종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41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R은 같은 등기소 1966. 6. 23. 접수 제3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종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41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K, L, M, S, T, U은 같은 등기소 1966. 6. 26. 접수 제375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G종회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41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종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41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K, L, M, S, T, U은 같은 등기소 1966. 6. 26. 접수 제375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종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413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H, I, J, K, L, M, S, T, U, R은 같은 등기소 1966. 7. 4. 접수 제380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년 금제1439호로 공탁한 3,332,662,500원 중 209,834,306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년 금제3461호로 공탁한 54,131,000원 중 3,408,248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 6.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년 금제1867호로 공탁한 85,388,390원 중 5,376,306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년 금제849호로 공탁한 82,542,000원 중 5,197,089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F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8.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B, C, D, E와 피고 G종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G종회가,

나. 원고 F와 피고 G종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G종회가,

다. 원고들과 피고 H, I, J, K, L, M, R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라. 원고들과 피고 N, O, P, Q, V, W, X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마. 원고들과 피고 S, T, U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2 내지 7항 및

가. 원고들에게,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K, L, M, N, O, P, Q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66. 6. 23. 접수 제3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2) 별지1 목록 제4,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V, W, X는 같은
등기소 1966. 7. 4. 접수 제380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3)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K, L, M, N, O, P, Q, V, W, X는 같은 등기소 1966.
7. 4. 접수 제38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년 금제1439호로 공탁한
3,332,662,500원 중 별지2 내역표의 '제1 공탁금'란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년 금제3461호로 공탁한 54,131,000원 중 별지2 내역표의 '제2
공탁금'란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 6.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년 금제1867호로 공탁한

85,388,390원 중 별지2 내역표의 '제3 공탁금'란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년 금제849호로 공탁한 82,542,000원 중 별지2 내역표의 '제4 공탁금'란 기재 각 금액 중 원고 A, B, C, D, E별 해당 금액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 B, C, D, E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7항 및

가. 원고들에게,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종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41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K, L, M, N, O, P, Q, R은 각 같은 등기소 1966. 6. 23. 접수 제3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종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41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V, W, X는 같은 등기소 1966. 7. 4. 접수 제38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다) 피고 K는 3/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L, M은 각 92/1,792 지분에 관하여, 피고 S, T, U은 각 44/384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1966. 6. 26. 접수 제375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G종회는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41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종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41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V, W, X는 같은 등기소 1966. 7. 4. 접수 제38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다) 피고 K는 3/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L, M은 각 92/1792 지분에 관하여, 피고 S, T, U은 각
44/38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6. 6. 26. 접수 제375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종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413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K, L, M, N, O, P, Q, V, W, X는 같은 등기소 1966. 7. 4. 접수 제38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다) 피고 H, I, J, R은 각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K는 1/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L, M은 각
138/4,032 지분에 관하여, 피고 S, T, U은 각 66/864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등기소 1966. 7. 4.
접수 제380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년 금제1439호로 공탁한
3,332,662,500원 중 별지2 내역표의 '제1 공탁금'란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년 금제3461호로 공탁한 54,131,000원 중 별지2 내역표의 '제2
공탁금'란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 6.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년 금제1867호로 공탁한
85,388,390원 중 별지2 내역표의 '제3 공탁금'란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년 금제849호로 공탁한 82,542,000원 중 별지2 내역표의 '제4
공탁금'란 기재 각 금액 중 원고 A, B, C, D, E별 해당 금액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 B,
C, D, E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G종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41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2) 피고 R은 같은 등기소 1966. 6. 23. 접수 제3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G종회는 원고 A에게,

1) 별지1 목록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41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2)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413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년 금제1439호로 공탁한

3,332,662,5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년

금제3461호로 공탁한 54,131,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 6.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년

금제1867호로 공탁한 85,388,390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년 금제849호로 공탁한 82,542,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AA의 장손인 AB2)의 후손들이고, 피고 2 내지 18은 AA의 후손 중 AB의 직계후손이 아닌 후손 및 그 배우자들로, 피고 G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는 AC씨 26세 AD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직계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AA의 후손들은 별지3 가계도 기재와 같다[가계도상 사망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사람 중 Y의 배우자 AE는 2004. 6.경 사망하였고, AF은 2014. 8. 24.

사망하였다. 한편 AF의 배우자인 AG, 자녀 AI, AJ, AK는 각 피고 N(미합중국에 거주하면서 AF의 성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O(미합중국에 거주하면서 혼인으로 성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P, Q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및 AB의 단독상속

1) AA은 1912년경 하남시 AL동(사정 당시 '광주군 AM리'였으나 이후 '하남시 AL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AN 전(사정 당시 지목은 '임야'였으나 이후 '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현재 등기부에 기재된 지목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9,048㎡, AO 답 2,750㎡, AP 전 3,693㎡를, AA의 장남인 AH은 1919년경 하남시 AQ 임야 79,538㎡를 각 사정받았다(이하 AA과 AH이 사정받은 위 분할 전 각 토지를 지번에 따라 'AL동 ○○○ 토지'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 AA은 1930. 6. 24. 사망하였고, AH은 1938. 1. 30. 사망하였으며, AH의 장남인 AB이 상속 당시의 민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기재 및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기(아래 표 '최초 등기'란에 기재된 각 등기를 각 토지의 지번에 따라 'AL동 ○○○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라고만 하고, 그중 AO, AP, AQ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하며, 아래 표 '합유 등기'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토지의 지번에 따라 'AL동 ○○○ 토지의 합유 등기'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합유 등기'라고 한다)가 이루어졌고, 피고 종중은 1994.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 1.부터 1994. 12. 31.까지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41333호(AN 토지), 제41331호(AO, AP 토지), 제41334호(AQ 토지)로 각 1966.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AN 토지	1937. 10. 18. Y, AR 소유권회복등기 1954. 3. 14. AB 소유권이전등기	1966. 6. 23. 하남등기소 접수 제3629호 A, AS, AF, R 소유권이전등기(합유)3) AN 토지의 등기부상 위 A, AS, AF, R을 공유자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후 이루어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합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등기는 합유 등기이고 공유자로 표시된 부분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등기원인: 1966. 1. 8.자 매매)	1994. 12. 29. 하남등기소 접수 [제41333호(AN), 제41331호(AO, AP), 제41334호(AQ)] 피고 종중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66. 7. 20.자 매매)
AO 토지 AP 토지	1966. 6. 23. 하남등기소 접수 제3750호 AB, Y 소유권보존등기	1966. 7. 4. 하남등기소 접수 제3801호 Z, A, AS, AF, AT 소유권이전등기(합유) (등기원인: 1966. 6. 23.자 매매)	
AQ 토지	1966. 7. 4. 하남등기소 접수 제3802호 Y, AB, Z 소유권보존등기	1966. 7. 4. 하남등기소 접수 제3803호 A, AS, AF, AT 소유권이전등기(합유) (등기원인: 1966. 5. 5.자 매매)	

라. 관련 민사소송

피고 종중은 원고 A과 Z, AS, AF, AT, 피고 R(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종중 소유로서 원고 A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합18950호), 제1심법원은 1994. 6. 2. 원고 A 등이 불출석하여 피고 종중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 종중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관련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2022. 9. 14.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2나106호), 항소심법원은 2023. 10. 19. 원고 A이 제1심판결의 소장 부분 송달 전에 이미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제1심판결상 원고 A의 주소가 적법한 법정송달장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항소는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 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항소이고, 피고 종중은 이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 A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종중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관련 항소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 중 AN 토지는 2020. 8. 21.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AO

토지는 2020. 8. 21. 별지1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AP 토지는 2020. 8. 21.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AQ 토지는 2020. 8. 20. 별지1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한편 원고 F은 2021. 3.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단50595호), 같은 날 그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한다)는 AU지구 공공주택사업(10차)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부지에 편입된 별지1 목록 제2, 3, 6, 8,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2. 3. 10.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를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을 3,332,662,500원, 수용개시일을 2022. 5. 4.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년 금제1439호로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3,332,662,500원을 '이 사건 수용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종중에게 보상금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원고 F의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피고 종중과 원고 F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이하 '제1 공탁'이라고 한다), 202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년 금제3461호로 2022. 8. 25.자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54,131,000원을 마찬가지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종중과 원고 F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으며(이하 '제2 공탁'이라고 한다), 2023. 6.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년 금제1867호로 피고 종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676호 손실보상금소송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80,7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85,388,390원을 위와 같이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종중과 원고 F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이하 '제3 공탁'이라고 한다), 2024.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년 금제849호로 이 사건 수용토지의 인접 잔여지인 별지1 목록 제1, 4, 5, 7항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4. 1. 11.자 손실보상금재결에서 정하여진 보상금 82,542,000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종중과 원고 F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이하 '제4 공탁'이라고 하고, 제1 내지 3 공탁과 합하여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의 상속관계

1) AB은 1975. 1.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AV, 장남(호주상속남, 이하 같다) 원고 A, 차남 원고 E, 미혼인 딸 원고 D, 혼인한 딸 AW, AX, 원고 B, C이 있었다. 이후 AV가 1985. 2.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장남 원고 A, 차남 원고 E, 혼인한 딸 AW, AX, 원고 B, C, D(AB 사망 후 AV 사망 전에 원고 D도 혼인하였다)이 있었다. 한편 AW이 2017. 11. 27.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그 자녀인 원고 F이, AX이 2017. 10. 1.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그 자녀인 AZ, BA이 있었다.

2) 민법상 상속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다. 이러한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1975. 1. 13. 사망한 AB의 상속재산은 배우자 AV 2/18, 4) 장남 원고 A 6/18, 차남 원고 E 4/18, 미혼인 딸 원고 D 2/18, 혼인한 딸 AW, AX, 원고 B, C 각 1/18 비율로 상속되었고, 그중 AV가 상속한 2/18 지분은 AV가 1985. 2. 23. 사망함에 따라 장남 원고 A 6/15, 5) 차남 원고 E 4/15, 혼인한 딸 AW, AX, 원고 B, C, D 각 1/15 비율로 상속되었으며, AW, AX이 상속한 각 17/270 지분 6) 은 AW, AY이 사망함에 따라 다시 AW의 지분 전부가 F에게, AX의 지분의 1/2 지분씩이 각 AZ, BA에게 상속되었다.

민법상 상속지분비율

① 1958. 2. 22. 민법 제정 (1960. 1. 1.부터 1978. 12. 31.까지)

처(0.5) 또는 남편(1): 호주상속남(1.5) : 남(1) : 출가녀(0.25): 여(0.5)

② 1977. 12. 31. 민법 일부개정 (1979. 1. 1.부터 1990. 12. 31.까지)

처(1.5) 또는 남편(1) : 호주상속남 (1.5) : 출가녀(0.25): 남(1): 여(1)

③ 1990. 1. 13. 민법 일부개정 (1991. 1. 1.부터 현재까지)

처 또는 남편 (1.5): 남(1): 여(1)

3) 위와 같은 상속관계에 따라 AB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정한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AV	2/18	-	-	-	-	-
AW	1/18	1/135	-	-	-	34/540
F (AW의 자녀)	-	-	AW 지분 전부	-	-	

AV	2/18	-	-	-	-	-
AX	1/18	1/135	-	-	-	17/540
AZ (AX의 자녀) BA (AX의 자녀)	-	-	-	AX 지분 1/2 AX 지분 1/2	-	
A	6/18	6/135	-	-	-	204/540
B	1/18	1/135	-	-	-	34/540
C	1/18	1/135	-	-	-	34/540
D	2/18	1/135	-	-	-	64/540
E	4/18	4/135	-	-	-	136/540
합계	1	15/135(2/18)	17/270	17/270	-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내지 16, 18, 20, 23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7, 12,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합유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당사자적격

1) 관련 법리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며, 한편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소중 이 사건 합유 등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AN 토지에 관하여 1996. 6. 23. 원고 A과 AS, AF, 피고 R 명의로 합유 등기가 마쳐졌고, AO, AP 토지에 관하여 1966. 7. 4. 원고 A과 Z, AS, AF, AT 명의로 합유 등기가 마쳐졌으며, AQ 토지에 관하여 1996. 7. 4. 원고 A과 AS, AF, AT 명의로 합유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Z가 2018.

11. 16., AS이 1991. 10. 27., AF이 2014. 8. 24., AT이 2011. 8. 28. 각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합유 등기와 관련하여 AN 토지는 잔존 합유자인 원고 A와 피고 R의 합유로, AO, AP, AQ 토지는 잔존 합유자인 원고 A의 단독소유로 각 귀속될 뿐이고 각 토지의 합유자였던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로서 ① AN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 K, L, M, N, O, P, Q, ② AO, AP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 R, H, I, J, K, L, M, N, O, P, Q, V, W, X, ③ AQ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 K, L, M, N, O, P, Q, V, W, X는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피고들은 위 망인들 명의의 위 합유 등기의 말소에 있어 그 등기의무자로서의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R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합유 등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제외한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합유 등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1) 관련 법리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종중과 원고 F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피고 종중 내지 원고 F이고,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로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D, E의 피고 종중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AA과 AB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을 AB(1975. 1. 13. 사망)이 단독상속한 것이므로 그 후손인 원고들의 소유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져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적법한 등기이고, 피고 종중이 1966년경 AB으로부터 출연받은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마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1986. 1. 1. 이후의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부적법한 확인서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등기로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합유 등기의 경우 위 각 등기 경로 당시에 피고 종중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각 등기의 실체관계로 주장되는 피고 종중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내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종중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종중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AB 내지 그 후손들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그 점유에 악의 내지 과실이 존재하므로, 피고 종중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고 등기명의인의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합유 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무권리자인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 중 이 사건 수용재결로 수용되지 않은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과 관련한 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설령 그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종중은 1966년경 종전부터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된 종산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AB으로부터 출연받아 종중원 일부에게 이 사건 합유 등기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피고 종종 앞으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이다.

나) 피고 종종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10년 동안 점유하여 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나. 판단

1)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내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가)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7037 판결 등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444, 445 판결,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와 AH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사정받아 AH의 장남인 AB이 단독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B의 후손인 원고들과 AZ, BA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AA, AH이 원시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합유 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앞서 제2항에서 이 사건 소 중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과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수용토지 이외의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합유 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 F와 피고 종종 사이에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별지2 내역표의 제1 내지 4 공탁금란 각 순번 제6번 기재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F에게 있다고 인정된다(피고들이

이 사건 수용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및 이와 관련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 종중을 상대로 그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F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를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그 원인행위가 같은 법에서 정한 일자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위 일자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인행위가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45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6.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특별조치법 제3조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1966. 7. 20.자 매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피고 종중이 1966년경 이 사건 토지를 AB으로부터 출연받아 이 사건 합유 등기로 종중원인 원고 A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③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종중이 관련 제1심판결에서 소장 부분 송달을 통해 원고 A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장 부분이 Z, AT, 피고 R에게 1994. 1. 10., 원고 A에게 1994. 4. 23.(다만 관련 제1심판결상의 주소로 송달되었고, 원고 A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미합중국의 주소지에 송달되지는 않았다), AS에게 1994. 4. 8., AF에게 1994. 4. 22.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이 적용대상으로 정한 1985. 12. 31. 이전의 법률행위가 아닌 1994년경 이루어진 위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66년경 이루어진 AB의 출연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위 출연행위는 이 사건 합유 등기의 등기원인일 뿐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직접적인 등기원인은 이 사건 합유 등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여부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1, 13,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종래부터 실질적인 종산으로 이용되어 AA의 혈족의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주장의 전체 분묘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치된 분묘의 경우 종산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AA, AH, AB의 용인으로 분묘가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설치 경위가 분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AH의 차남인 Y, Y의 장남인 AS의 경우 이 사건 합유 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90. 11. 19., 1991. 10. 27. 각 사망하였음에도 그 분묘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가 종래부터 실질적인 종산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AB이 단독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종중에 출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R 등 AA의

후손들이 종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AA의 혈족의 분묘에 성묘하거나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이는 하나, 이 사건 합유 등기가 마쳐진 1966년경 AA의 후손들 사이에 친족단체로서의 조직, 규약 등이 체계화되었다거나 묘제, 기제사, 위토 관리 등의 실질적인 종중 활동이 정립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종중은 1992. 6. 2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종회 정관을 만들고 1994. 9. 29. 하남시에 종중으로 등록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직 및 규약을 갖추고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 무렵에서야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관련 제1심판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한 점, ④ 나아가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1992. 6. 22.자 창립총회 및 1994. 12. 20.자 총회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유 등기의 명의자이자 AA의 장손인 원고 A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원고 A의 주소를 실제 거주하는 미합중국 주소가 아닌 국내 주소로 기재하여 피고 종중이 승소하는 제1심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받은 AB의 후손들인 원고 측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못하였던 점, ⑤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게 AA이 사정받고 피고 종중의 종중원들 앞으로 합유 등기가 마쳐진 하남시 BB 전 1,683㎡, BC 전 1,683㎡에 관하여 위 합유 등기 이후 Z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종중이 이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1966년경 AB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종산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아 이를 원고 A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여부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AA, AH이 각 사정받아 AB이 단독상속한 재산인 점, ② 피고 종중은 원고 A이 AB의 장남으로서 AA의 장손인 사실과 이 사건 합유 등기의 명의자로 등기된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 사건 합유 등기의 명의신탁 해지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1992. 6. 22.자 창립총회 및 1994. 12. 20.자 총회와 관련하여 원고 A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관련 제1심판결 절차에서는 원고 A의 주소를 실제 거주하는 미합중국 주소가 아닌 국내 주소로 기재하여 피고 종중이 승소하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제41333호), 피고 R은 이 사건 합유 등기(제3629호)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제41331호), 피고 K, L, M, S, T, U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66. 6. 26. 접수 제375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제41331호)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④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제41331호), 피고 K, L, M, S, T, U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66. 6. 26. 접수 제375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⑤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제41334호), 피고 K, L, M, S, T, U, R, H, I, J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66. 7. 4. 접수 제380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년 금제1439호로 공탁한 3,332,662,500원 중 209,834,306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년 금제3461호로 공탁한 54,131,000원 중 3,408,248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 6.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년 금제1867호로 공탁한 85,388,390원 중 5,376,306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년 금제849호로 공탁한 82,542,000원 중 5,197,089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토지 지분 34/540을 상속받은 원고 F에게 있다(위와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R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합유 등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합유 등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과 원고 A, B, C, D, E의 피고 종중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곤

판사장동규

판사유지윤

별지

1) 주위적 청구취지에서 아래 나의 3)항, 라의 3)항, 마의 3)항 부분에 망 Y, Z의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반영한 내용이다.

2) AB은 AH의 장남이고, AH은 AA의 장남이다.

3) AN 토지의 등기부상 위 A, AS, AF, R을 공유자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후 이루어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합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등기는 합유 등기이고 공유자로 표시된 부분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4) 피상속인 AB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비율 합계를 정수로 계산한 18[= 4.5{배우자 AV 0.5 + 장남 원고 A 1.5 + 차남 원고 E1 + 미혼인 딸 원고 D 0.5 + 혼인한 딸 AW, AX, 원고 B, C 각 0.25(4명)} × 4] 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비율. 이하 같다.

5) 피상속인 AV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비율 합계를 정수로 계산한 15[= 3.75{장남 원고 A 1.5 + 차남 원고 E1 + 혼인한 딸 AW, AX, 원고 B, C, D 각 0.25(5명)} × 4] 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비율. 이하 같다.

6) 피상속인 AB 상속재산 중 상속지분비율 1/18 + 피상속인 AV 상속재산 중 상속지분비율

1/135{AV가 피상속인 AB의 상속재산 중 상속받은 지분 $2/18 \times$ 피상속인 AV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비율 1/15)